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 9. No. 1, pp. 74-85, 2019
e-ISSN 2586-4440
DOI : https://doi.org/10.22156/CS4SMB.2019.9.1.074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서비스에 대한 질적 연구

최희철[1], 배은미[2], 박동진[3], 신숙경[4*]
[1]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2]태화샘솟는집 부장
[3]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4]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Qualitative Study on Services in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Hee-Chul, Choi[1], Eun-Mi, Bae[2], Dong-Jin, Park[3], Sook-Kyung, Shin[4*]
[1]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2]Program Director, Taiwha Fountain House
[3]Research Professo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Social Welfare, Kangnam University
[4]Assostnat Professor, Department of Rehabilitation, Jeonju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직업재활서비스가 어떠한지 상황을 파악하고 서비스 개선 전략을 제언하고자 직업재활 시설장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라는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처한 다양한 욕구상황을 고려한 종합적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지 않고 정신재활시설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직업재활시설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셋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 뿐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넷째,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체계화되어 있는 않은 법과 제도의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환경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언 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직업재활서비스, 시설장의 인식, 복지와 경영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 environment of the mentally facilities. Focus group interview (FGI) was conducted for obtain the data. According to the interview results, first, in providing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for people with mental illness, comprehensive services should be provided considering various needs. Second, the facilities are not recognized a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refore, it is operated according to the regulations on mental rehabilitation facilities in the Mental Health Welfare Act. Third, they need management supports. Finally, It raised the necessity of revising laws and systems that are not systematized without reflecting real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ome suggestions are presented.

Key Words : People with mentally illness,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Vocational rehabilitation services, Recognition of facility director, Welfare and management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Research Grants (2017)
*Corresponding Author : Sook-Kyung Shin(ssookk73@hanmail.net)
Received November 19, 2018 Revised December 6, 2018
Accepted January 20, 2019 Published January 28, 2019

1. 서론

만성적인 정신질환자들은 지역사회에서 직업을 구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또한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정신질환자들이 다양한 사회기술, 직업기술, 대응능력, 증상관리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1].

특히 정신질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생겨난 것이 바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이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2017년 12월말 현재 전국에 11개 시설이 설치되어있을 정도로 정신질환자 수에 비해 아직은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만의 고유한 직업재활서비스 체계를 갖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는 소수의 연구들[2,3] 외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정신재활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정신건강전문가에 의해 취업 전 훈련, 보호 작업,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지도 등의 직업재활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4]. 그러나 일찍이 시작된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에 비해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는 그 역사가 오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아직은 직업재활시설만의 지침도 갖고 있지 않아 매우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서 정신장애가 법정장애유형에 추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서비스로서의 직업재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다소 미흡했던 정신장애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확대되는 변화가 생겼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중에서 장애인등록이 되는 비율이 그리 높지 않아 서비스 수혜자 수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직업재활 등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해도 임금 수준이 낮고, 비정규직으로서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 등 열악한 고용환경에 처해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5-9].

이러한 상황들 속에도 국내에서는 그 동안 정신질환자 직업재활과 관련하여 직업 훈련을 통해 실제 근무지로의 고용으로 이어지는 직업재활을 많이 시도해왔다.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가 직업현장에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보호작업장 내에서의 고용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10].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 환경은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질환자의 질병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면서도 직업적인 능력을 고려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신질환자들의 직업재활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이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무엇보다도 정신질환자의 직업재활에서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 전반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그 동안 거의 논의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이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은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기능과 역할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 환경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최일선에서 실무자와 같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장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탐색해봄으로써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 및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

2. 연구방법

2.1 연구참여자 선정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직업재활서비스 환경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시설장이 가장 적절한 자료원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구진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장들에게 연구목적 및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연구참여의사를 밝힌 8개

시설의 장을 최종 연구참여자로 선정하게 되었다. 연구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Research Participants

No.	gender	age	Religion
1	female	38	Kyeonggi-do
2	female	42	Seoul
3	female	37	Seoul
4	female	33	Seoul
5	female	36	Seoul
6	female	40	Seoul
7	female	37	Kyeonggi-do
8	female	45	Seoul

2.2 자료수집방법

자료수집은 2018년 6월에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주제와 관련하여 좀 더 심도 깊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eiw: FGI)를 한차례 실시하고 이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진에서 사전에 작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기초로 하여 연구참여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 및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사전 동의하에 녹음을 실시하였고, 인터뷰를 마친 후에 문자 형태로 전사하였다. 인터뷰 녹음파일과 전사 자료를 반복적으로 비교하여 확인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였다.

2.3 자료분석방법

자료분석방법으로 주제분석을 사용하였는데, 첫단계에서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비교하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비슷한 경험과 연구사례별로 고유하게 발견되는 경험들을 확인하고, 주제를 찾아내어 이름을 붙였다. 이를 각 주제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하여 범주화하였다. 이를 원자료와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확인하면서 붙여진 이름이 적절한지, 그리고 범주화된 결과가 적절한지를 점검하였다.

2.4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본 연구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장애인직업재활 전문가인 재활학 전공 교수 1명과 정신장애인 재활 전문가인 정신장애재활시설의 시설장 1명으로부터 자문을 받았다. 또한 연구진의 정기적인 회합을 통하여 연구진행과정에 대한 검토 및 확인을 거쳤다.

2.5 연구참여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기본적으로 연구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연구결과의 활용처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이 녹음이 된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자발적인 동의를 얻었으며, 개인적인 정보와 경험에 대한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과 익명 처리, 연구 참여 철회 가능성 등에 대해서 안내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참여자로부터 획득하게 되는 정보는 매우 중요한 자료원이 되었다. 그러나 연구 참여자들이 인터뷰를 통해 진술하게 되는 내용들은 기관 내부에 관한 것이고, 특히 소수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것이므로, 다소 민감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대해 연구참여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함은 물론이고, 사전에 인터뷰 질문목록을 확인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참여자가 본 연구에 대해 충분히 숙지한 후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에게 다소 민감한 정보가 될 수 있는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공개범위를 조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정신질환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모두를 위한 직업재활 고려

정신재활시설의 경우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중 의사의 소견서나 의뢰서를 지참해야 등록을 하게 됨. 정신재활시설의 이용대상자는 법적으로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도 있으나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도 다수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첫째, 정신질환이 있으나 법적으로 장애인등록 기준이 아닌 종류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경우, 둘째, 가족이나 당사자 본인이 사회적 편견 등의 이유로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셋째, 젊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이용자를 고용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로 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어려움이 동시에 존재한다. 혹은 질병이 장애 기준에 해당되는 질병이 아닌 경우 장애인 등

록을 하지 않았어도 생산능력이 낮은 이용자도 있다. 또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 대부분 중증만성 정신장애인이므로 노동 능력이 낮아, 사회재활서비스의 제공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3.1.1 만성중증정신장애인 고용상의 어려움

가. 만성중증정신장애인 채용으로 인한 생산력 저하

인터뷰에 참여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유형에서는 해당 시설 내에 정신장애인을 직접 고용하기도 하고, 일부 시설에서는 지역사회내의 일반 사업장에 취업을 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일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이용자는 지역사회내의 일반 사업장에 취업하도록 지원하고,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힘든 경우 직업재활시설에 남아서 일을 하는 상황이어서, 남아있는 이용자의 생산성이 높지 않아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회원분들이, 직업재활시설이지만 중증인분들이 많으신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직업재활을 정말 잘하려면 기능 좋은 사람들을 받아야 되나? (연구 참여자 1)

나. 사회재활과 생산성 확보 간 균형잡기의 어려움

정신질환이 있는 이용자의 재활을 위한 사회복지 활동과 직장생활인으로서의 노동을 지원하는 것 간에 균형을 맞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중적인 서비스를 잘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참 힘들고. 때로는 정신보건 쪽은 어쩌면 그분들의 특성화된 부분이 있고. 일단 그 분들에 대한 지원이 참 많이 부족합니다. (연구 참여자 2)

다. 만성중증정신장애인의 복지차원의 고용이라는 원래 목적 달성을 위한 고민이 필요함

직업재활시설은 원래 취지상 노동 능력이 낮아 일반 사업체에 경쟁고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중증정신장애인에게 취업의 기회를 가져 직업관련 훈련을 받고 일하며 최소한의 소득을 올리도록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이다. 원래 취지에 맞춰 중증정신장애인에게 복지적 차원에서 취업의 기회 부여 및 훈련에 그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사업 유지를 위해 업무능력이 좋은 정신장애인이나 장애 미등록 정신질환자를 선별해서 일하도록 해서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하는 고민을 안고 있었다.

중증장애인시설이면 시설 이름이면 중증장애인시설인데 자꾸 거기에 기능 좋은 장애인만 중증장애인에서도 경증장애인만 올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생산력을 자꾸 높이라고 할 게 아니라, 원래 본래 사업 취지 목적을 하려면 그것보다도 더 여기가 우리가 사회복귀를 어떻게 시켰냐 라든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걸 측정을 해야지 (연구 참여자 3)

3.1.2 기초생활수급액 감액과 장애인등록박탈 가능성이 노동진의 장벽이 됨

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수급비 감면이 노동의욕을 감소시킨다고 생각함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으로 국가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정신장애인의 경우 수입이 있으면 수급비가 감면되어 노동에 대한 의욕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회원들의 반응은 그들의 취업을 돕는 실무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급여를 받으면 수급비가 감액되어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였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하려 해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깎이니까. 모든 법에서 사실 직업재활이 갖는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에요 (연구 참여자 6)

나. 근로를 하는 경우 노동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장애인등록이 박탈될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음

정신장애인으로 등록한 이용자의 경우 수입이 발생할 경우 단순히 수급비가 감면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다. 장애 재판정시 노동 능력이 있다고 판단해서 장애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는 불안이 내재되어 수입이 발생하는 일을 하는데 불안을 갖고 있어 일하려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수급이 박탈될 건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주민센터에서 한 번이라도 (근로능력이 있으시네요.. 라고 하는) 전화를 받으면 겁을 내고 안 하려고 해요 (연구 참여자 1)

다. 정신질환은 있으나 등록장애인이 아닌 회원을 고용함으로 인한 어려움 발생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이들 가운데 법적으로 장애등록이 가능한 질병군은 정해져 있다. ICD-10 기준으로 조현병,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분열 정동장애로 진단 받은 후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음에도 동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 정의되어 있다. 알코올 중독자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안장애 등의 질병으로 취업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장애등록 대상이 되지 못하는 이용자군이 발생한다. 또한 개인이나 가족이 편견 등으로 장애 등록을 회피하거나 나이가 어린 경우 장애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질병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고 있고 경쟁고용을 통해 취업이 어려워서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경우이더라도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직업재활 시설 대상자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고민이 있었다.

정신질환자를 포함할 수 있는 유형은 많아요. (그렇지만 저희 직업재활 시설의 이용 기준은) 장애인 기준이니까. 장애인이 아닌 사람까지 대상자로 해야 될 것인지. (연구대상자 5)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를 받을 수 없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하지만 예산의 제한과 낮은 수입으로 이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줄 수 없다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갖고 있었다.

기능이 좋은 분들은 장애인 등록이 안 되요. 그러니까 기관에 저희 올 수 없고요. 최저임금 예외적용을 받을 수가 없고요 (연구 참여자 6)

미등록장애인을 시설에서 고용한 경우,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국가에서 고용주에게 제공하는 고용장려금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도 없었다. 직업재활시설은 이러한 국가로 부터의 지원이 중요한 재원이 되므로 안정적인 사업 운용에 어려움이 되기도 하였다.

(알코올)중독자들은 장애인등록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받을 수 있는 그나마 작은 인센티브도 하나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연구 참여자 7)

3.2 직업재활시설 운영상의 장애물이 되는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규정 개선 필요

3.2.1 예산규정이 직업재활시설과 맞지 않음

현재 정신재활시설의 예산은 인건비, 프로그램비, 관리운영비 세 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었다. 각 예산 항목은 용도에 맞추어서 사용해야 하므로 섞어서 지출할 수 없었다. 이 중 프로그램비가 그 시설의 주요한 사업 진행에 사용되게 되는데 주로 회원들과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이어서 직업재활 훈련을 위해 사용하기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었다. 실제로 업무 점검에서도 프로그램비의 사용 내용을 확인하므로, 시설에서 직업재활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데 부담을 갖고 있고 홍보나 직업훈련 등의 비용으로 지출하지 못하고 있었다.

예산을 뽑고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산을 담당하기를 바라고 고용을 하기 바라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책정이 되어야죠. 지금은 절대 그러지 않잖아요. 지금 현재는 재활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이런 직업재활에 대한 예산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책정되어 있지 않다는…재활시설 기준이어서 저희 같은 직업재활시설의 생산(향상을 고려한 것)은 아닌거죠 (연구참여자 4)

3.2.2 프로그램 규정이 직업재활시설과 맞지 않음

정신재활시설의 규정에는 직업재활시설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규정된 것이 없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프로그램은 기존의 주간재활프로그램의 기준에 준해서 운용하고 있었다. 직업과 관련된 훈련이나 실제 직업활동을 해야 하나 직업재활훈련을 위한 고유한 프로그램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신재활시설 중 주간재활시설 기준에 의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므로 재활 훈련을 진행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직업훈련을 시켜야 하는데 맨날 프로포절 쓰고 있고, 맨날 회원들 하고 프로그램 하고 있고, 해야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 모든 법에서 다 적용되는 부분이 재활과 더 맞아요. (규정에 따르자면) 우리가 하는 생산

품 시설 보다는 생산품을 제조하는 어떤 그런 것 보다는.. (주간재활시설과 마찬가지로) 재활 훈련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6)

3.2.3 시설평가기준이 직업재활시설과 맞지 않음

정신재활시설은 연 2회 보건소에서 지도점검을 받고 있고, 3년에 한번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 평가도 받고 있었다. 현재의 직업재활시설은 별도의 규정이 정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설의 수가 적어서 지도점검과 평가 시 직업재활시설로서의 고유한 특성을 고려 받지 못하고 있었다. 즉, 프로그램 내용과 예산 지출을 주간재활시설의 기준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직업재활 시설의 프로그램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나타나는 결과이었다. 직업재활시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평가 기준이 변경되어야 시설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혹은 직업훈련 형태가 아니라 직접 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근로가 중심인데, 주간재활과 동일한 프로그램 유형을 기준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다. 직업재활시설이라는 시설유형과 만성중증장애인이라는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평가나 지도점검도 오면 여기가 사회복귀시설이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회복귀시설의 엄청난 지도점검을 하루 종일 받아요. 수익사업에 대한 지도점검은 사실 하여간 그걸 저희한테가 아니라 법에서 명확히 해주면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복귀시설이면 사실 훈련하는게 맞죠.(연구 참여자 6)

3.2.4 직업재활시설 가이드가 없을뿐더러 시설 유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있지 않음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직업재활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이 없을뿐더러 유형에 대한 언급이 없어 현재의 직업재활시설은 기관에서 설정한 방향대로 운영하고 있어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금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쪽은 굉장히 그 쪽으로 되어 있어요. 훈련시설, 보호시설, 근로시설… 저희는 안 되어 있잖아요. 정리를 해야죠. 하나로 모아놓고 생산만 하라는 건…. 어우 다 틀린 사람들을 데리고 (연구 참여자 2)

3.2.5 타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가 어려움

주간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시설로의 회원 의뢰는 전혀 없거나 거의 없다는 답이 일반적이었다. 현재 직업재활시설을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서비스 흐름의 한 부분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였다.

가. 시설 간의 서비스의 차별성이 거의 없거나 환경면에서 열악하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주간재활시설에서도 직업재활 프로그램이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거나, 혹은 주간재활시설의 경우 오히려 직업재활시설에 비해 규모가 크고 시설 정비도 잘 되어 있어 회원들이 주간재활 시설을 선택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주간재활시설하고는 (의뢰나 연계가) 특히 많지가 않아요. 직업재활과 연계가 없는데 (연구 참여자 5)

OO(주간재활시설) 같은 경우는 워낙 세팅도 잘되어 있고…(중략)…건물 자체도 OO 시설에 들어가면 정말 좋아요. 이렇게 건물도 너무 잘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임대시설에다가…(중략)…10 몇 년, 20 년은 된 것 같은 건물이니까 사실 회원분들이 여기에 오시면…(안 좋게 보일 것 같아요) (연구 참여자 1)

나. 이용정원 정원제로 인하여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제도상 주간과 직업재활시설 두 곳에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기 때문에 주간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 시설로 의뢰되기가 어렵다고 보기도 하였다.

이쪽에서 한 3년에서 5년 있으신 분이 (재활시설을) 이용하면서도 이쪽(직업재활시설)으로 오면 저희도 사용하기가 수월하지만, 그 부분(이중 등록이 금지되는 제도적 제약)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연구 참여자 6)

다. 주거시설에서는 연계의뢰가 있음

여러 종류의 정신건강 관련 시설 중 주거시설과는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서울의 경우 주거제공 시설 이용 기간이 3년으로 제한되어 있고 퇴소후 취업을 하고 있다는 조건으로 기숙형 공동생활 시설로 이전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경쟁고용이 어려운 대상자들이 기숙사형 공동생활가정의 '취업 중'이라는 입소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 직업재활시설로 의뢰되

는 회원들이 있다고 하였다.

주거시설과 맞아요. 오히려 연계가 훨씬 더 많이 되어요. 거기서 주간재활을 이용하다가 퇴소시점이 되서 공동체생활로 넘어갈 때 저희한테 의뢰를 많이 해요. 직업재활시설을… 직업이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오시긴 하더라고요 (연구 참여자 5)

3.2.6 시설유형의 다양화로 교육, 센터 역할 등을 통해 주간재활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과의 차별화 모색

가. 주간재활시설의 직업재활에 비해 열악한 측면이 있음

주간재활시설과 동일한 인력기준과 시설 기준을 갖고 있는데, 주간재활시설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주간재활은 자체는 다 상담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개념인데…(중략)… 왜냐하면 같은 인력. 인력구조도 같고 이 설치 기준도 같고 쉽게 생각하면 제가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저희 30평 정도의 규모에 공장직원 25명의 관리와 저희 직원까지 30평에 30명의 직원이 있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취약하죠…(중략)… 어쨌든 저희가 현재 주간재활에서 하고 있는 취업훈련을 시키고 취업을 시키는 게 저희의 일이에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저희에 일이에요 (연구 참여자 6)

나. 시설유형의 다양화로 차별성을 두는 것이 필요함

직업재활시설과 주간재활시설과의 기능을 구분하고 직업재활 시설의 다양화를 통해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부 기관의 경우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의 전환을 희망하기도 하였다.

유형별로 지원이 확실하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요. 고용이 조금 더 초점이 많이 된다면 장애인직업재활처럼 기능보강을 팍팍해주던가, 아니면 취업지원모델로 간다면 여기에 대한 교육에 대한 조금 더 전문성을 높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지원이 다르게 되어야지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 똑같은 기준으로 다 똑같이 하라고 하면 할 수 없거든요 (연구 참여자 5)

3.2.7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유형 정립 필요

가. 전체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방식이 서로 많이 다름

현재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유형으로 신고하여 운영하는 기관은 전국 11개소인데, 시설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용자나 운영 형태, 운영방식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심지어 시설 자체적으로도 그러한 서로간의 운영에 차이에 대해 서로간의 간극을 메우거나 유형화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우리가 서로 이제 직업재활이 지금까지는 그냥 각자 알아서 시설별로 열심히들 해왔잖아요. 여기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다양한 곳도 많고…(연구 참여자 1)

나. 현재 다수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보호고용이 주된 형태여서 변화가 요구됨

직업재활 시설이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기는 하지만 대다수는 보호작업장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보호작업장에서 벗어나 다른 직업재활시설 유형으로 전환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저는 직업재활시설 이콜(equal) 보호고용이 된다는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직업재활을 함에 있어서 보호고용은 그냥 하나의 방법? 수단인데…(중략)…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고용으로만 너무 치중되어 있는 시각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만 보고 있다는 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저쪽처럼 돈을 잘 벌 수 있으면 보호고용모델로 가면 되는 것이고 내가 외부취업을 조금 더 많이 시킬 수 있다면 지원고용모델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시각 자체가 돈을 버는 곳, 임금을 줘야하는 이렇게만 고정이 되니까 직업재활시설들이 할 수 있는게 그것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선택의 여지조차 없었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5)

3.3 경영과 운영 측면에서의 지원 요청

3.3.1 우리에게 적합한 업종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현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유형에서 제공하는 직종은 커피숍, 택배, 생산품 제작, 편의점 운영 등으로 다양하였다. 시설 운영자들은 직원 다수가 사회복지사인 직업재활시설 구조상 어떤 직종으로 운영해야 좋을지, 특히 이러한 다양한 업종이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저희의 생각은 과연 직업재활시설은 뭐로 특성화로 할까 굉장히 고민이에요 (연구 참여자 7)

3.3.2 경영 관련 지원이 요구됨

가. 설립 초기 정착 시 지원이 필요함

직업재활시설 시설장들은 설립초기에는 직업재활 시설 정립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들을 위해서 초기 설립 지원이 필요하였다.

기본적으로 세팅이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 내야 되고 사업자 등록 외에도 안 되어 있고. 일단 우리가 그걸 세팅을 해줘야 되요. 안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안 되어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연구 참여자 2)

나. 경영컨설팅, 연구 등 다양한 지식을 공유하고 나누는 과정이 필요함

시설장들은 정보나 경영관련 지식 부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였다. 실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달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는 경영컨설팅이나 연구 모임 등이 없다고 하였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컨설팅이 있어요. 여기에는 그런 거 없잖아요. 있어요? (연구 참여자 2)

다. 직업재활 전문인력 및 기능보강이 필요함

직업재활시설 종사자가 주로 사회복지를 전공한 인력이어서 경영이나 영업과 관련된 지식이 부족하다. 그렇지만 이 역시 현재의 제도에서는 정신보건관련 전문인력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직업재활시설인 경우 여러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는데, 장비를 구입하나 설비를 갖추기에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직원이 저까지 4명이에요. 한 사람은 회계를 하고 저는 또 나가 돌아다니며 물건 팔아야 되고 한 사람은 사례관리를 해야 되고. 한사람은 물건 납품해야하고…(중략)…말씀하신 대로 기능보강이라든가 어떤 직원, 전문인력들(이 필요해요), 생산품이 있으면 팔아야 하는 인력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복지만 배우고 와서 아주 퍼주는 식 인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어디 가서 물건 하나 팔지를 못해요. 그런 것이 조금 전문 인력이 보강해 준다든가, 기능 보강을 해서 기계를 설치할 수 있게. 이게 기계를 놓을 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니까 주간재활시설보다 설치 면적이 1.5배 내지 2배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이라고 하는 곳이 만만치가 않아요. 임대료가. 그것도 또 어려움이 저희 또 다 후원금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 임대료 하나 낼 수 없는 것이 저희 현실이거든요. 사실 어떤 것이든지 복지는 사람과 돈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연구 참여자 6)

라. 최저임금과 고용장려금 제도로 인한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함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등록을 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예외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있었다. 향후 최저임금이 계속 올라갈 예정이고 최저임금 예외 적용 인가 제도에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시설장들은 경영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었다.

(최저임금을 다 주어야 한다면) 문 닫을 거예요. 안할 거예요 (연구 참여자 5)

국가에서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지급되는 고용장려금의 경우도 인상되지 않아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그 외에도 큰 법인 산하에 속해 있는 경우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의 숫자가 전체 의무고용 수에 미치지 못해 장려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 장려금이 최근 10년 동안 계속 동결이에요. 근데 곁가지 사업들이 노동부에서 계속하고 있어요. 장애인들의 투자비용을 딴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표준화사업장 뭔 사업장, 뭔 사업장. 하루에도 몇 백 억씩 지원을 해줘요. 그런데 정작 장애인들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우리들. 일반기업들은 고용지원금을 안 올려줘요. 최근 작년에 여성장애인중증은 10만원 인상했어요. 50만원에서 60만원. 중증남성 40만원. 경□중증여성 60만원이에요. 그 외에 인상을 안해요. 10년 동안. 그런데 계속 임금은 올라가고 있어요 (연구 참여자 3)

3.4 가장 큰 걸림돌인 '법'과 '제도'의 개정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기반이 되는 것은 시설 운영을

규정해주는 법과 제도였다. 직업재활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정신보건법, 장애인복지법, 노동법, 근로법, 세법 등 다양한 법과 제도, 규정 등으로 제한 받는 일이 많았다. 실무현장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 모두가 시설을 운영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인식하였다.

3.4.1. 법과 관련된 논의에서 소외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

가.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없음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었으나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없고, 여전히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에 대한 고민이 지속되고 있었다.

○○ 지역에서는 이번에 정신보건법이 바뀌면서 이게 걱정스러운 거에요.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스러워서. 사회복귀시설을 지자체마다 얼마큼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 점수를 주겠다. 이거를 지금 통과는 아직 안된 것 같은데 조례안은 올렸어요.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있지만 직업재활에 관계된 건 전혀 없거든요. 이런 뭐 직업재활이 어떻고. 생겨야 되고, 직업재활은 어떻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연구 참여자 1)

나.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는 구심점이 없음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변화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지만, 시설의 수가 적고, 이러한 논의를 함께 할 사람과 구심점이 없어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래서 향후에 일어날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잔재하고 있었다.

직업재활시설은 어떻다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개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 직업재활시설이 많지가 않잖아요. ○○ 지역에도 저희 하나만 있고. 누구와 이야기를 할 거리도 없고… (연구 참여자 3)

3.4.2. 법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니어서 발생하는 취업지원상의 어려움

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니어서 여러 지원에서 제외됨

현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의 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직업재활시설이 아님을 의미하며, 결국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없었다.

정신질환자 및 사회복지시설…거기에 딱 되어 있어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만 해당된다. 저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귀시설이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인가증에도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연구 참여자 2)

나. 기업과의 연계가 안 됨

일반 기업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연계사업을 진행하면 장애인 고용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유형은 법적으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니어서 기업과의 연계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법률상으로 깊이 들어가면 저희는 해당이 안돼요. 많은 제재를 당해요. 그러면 기업이랑 연계고용을 하더라도 못하게 되거든요. 직업재활시설이 아니니까 (연구 참여자 2)

다. 대기업과의 연계고용 시도를 요청함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을 다양화 하여 시설에서 직접 고용을 하는 것과 다른 한 방법으로 타 기업과의 연계 고용을 시도해보고 연계고용을 위한 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연계고용이라는 것이 시범사업이라도 좋아요. 연계고용을 좀 시도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정말 직업기술훈련에 매진해서 지원고용모델을 확장시키려고 해서 취업을 정말 시킬만한 그런 시범사업을 해보든지. 뭐라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걸 시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에요 (연구 참여자 4)

라. 반면에 고용에 대한 의무는 모두 져야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고용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최저임금… 우리는 정신질환이 있어서 장애등급 안 되면 최저임금을 못 드리잖아요. 즉 이거에 대한 해법도 전혀 없고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일을 안 할려고 해요. 월급을 많이 받으면 깎이니까. 모든 법에서 사실 직업재활이 갖는 부분에 대한 마이너스에요 (연구 참여자 5)

3.4.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인정받는 법으로의 개정을 요청함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들이 가장 문제로 꼽고 있는 부분은 현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이 정신재활시설로 분류되어 있어, 장애인복지법 상의 직업재활시설로의 지위를 부여받지 못하고 그에 따른 혜택이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시설장들은 반복적으로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기를 바라고 있었다.

장애인복지법 15조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거기 한 줄만 딱 들어가면 되요. 정실질환자 및 사회복지시설…거기에 딱 되어 있어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만 해당된다. 저희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아니라는 거에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아니래요. 저희가.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귀시설이래요. 그래서 아니에요. 인가증에도 사회복귀시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연구 참여자 2)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 환경이 어떠한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장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경험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 환경과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자료를 분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정신질환자라는 특성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라는 점과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 만성중증정신장애인은 장애라는 이유와 그 장애의 정도가 중증이라는 점 때문에 고용이 어렵거나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근로를 통해 받게 되는 급여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액이 감액된다거나 장애인등록이 박탈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재활을 통한 취업을 주저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재활뿐 아니라 정신질환자가 처해있는 다양한 상황여건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 중 어느 것도 쉽게 접근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욕구파악과 함께 재활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재활시설에 대한 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이 직업재활시설 운영상황과 맞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예산규정, 프로그램 규정, 시설평가기준 등이 직업재활시설의 운영상황과 전혀 맞지 않았다. 또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직업재활시설 가이드가 전혀 없고, 타 정신재활시설과의 연계가 어려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이에 따라 시설유형의 다양화로 교육, 센터 역할 등을 통해 주간재활시설의 직업재활프로그램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이 정립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셋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시설운영 뿐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였다. 특히 직업재활시설에서는 실제 작업을 통해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고, 수익을 창출하게 되므로, 복지적인 접근뿐 아니라 경영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대부분이 경영적인 지식과 기술이 부족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경영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이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들을 갖추는 데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였다.

넷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에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법과 제도였다.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과 관련되어서는 미비한 상태 그대로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15조에 의해

등록 정신장애인들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많은 부분에서 제외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장애인등록이 되어서 충분한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다. 또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를 두고 설치되었기에 장애인직업재활서비스와 관련된 논의에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소외되고 있었다. 이는 법적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아닌 이유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취업지원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요청되고 있었다.

이와 같이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은 매우 열악한 서비스 환경 속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이들 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었으며, 이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과 제도의 개정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유형을 정립하여, 이들 시설에서 제공하는 직업재활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체제를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 시설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로 인정하여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가 정신장애인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 운영규정은 현재 운영상의 장애물이 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규정, 프로그램 규정, 시설평가 기준 등을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여건에 맞게 개선하도록 하고 이를 근거로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장의 인식을 중심으로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환경을 분석하였으므로, 시설장들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환경에 초점이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연구의 한계점이 될 수 있는데, 후속연구에서는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재무상태,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종합하여 분석한다면, 보다 다차원적인 환경 분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동안 논의가 거의 되지 못하였던 정신질환자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환경에 대해 접근하여 그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대책을 모색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REFERENCES

[1] J. S. Lee & S. Y. Lee. (2014). A Study on the Quality of Life and Recovery for a Mental Disorder.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457-465.

[2] Y. P. Lee. (2013). Case study on the growth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agency for mentally disabled person: focused on social capital theory. *Vocational rehabilitation research, 12,* 5-29.

[3] S. J. Kim. (2004). *A Study on The Operation of Work rehabilitation Facilities of Mentally Disabled.* Master's Thesis, J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Mental Health Business Guid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5] K. H. Ha & J. M. Sung.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conomic Activities of People with Psychiatric Disabilities -Comparisons between Disability Types- *Rehabilitation Welfare, 16(2),* 131-158.

[6] Employment Development Institute (2016). *2016 The Disabled Survey.*

[7] Y. H. Nam & I. S. Chae (2009). A Study on the of Maintenance for the Worker with Mental Disorder, *Journal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19(1)*, 187-201.

[8] Y. R. Lee (2018). Latent Means Analysis of Perceived Stigma, Psychological Employment,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Working Hours among the Employed People with Mental Ill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431-439.

[9] Y. C. Byun & J. S. Lee (2005).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Duration of Job Maintenance of People with Disabilities of Korea, *Disability & Employment, 15(1),* 153-171.

[10] H. C. Choi. (2017). Moderating Effect of the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Quality of Life of Employees with Mentally Disable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5(2),* 431-439.

최 희 철(Hee-Chul Choi) [정회원]

· 1995년 8월 :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
· 2009년 8월: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0년 3월~현재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 정신건강
· E-Mail: pride838@kangnam.ac.kr

배 은 미(Eun-Mi Bae) [정회원]

· 199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학사)
· 2006년 8월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석사)
· 2013년 2월 :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수료
· 1997년 6월~현재 : 태화샘솟는집 부장
· 관심분야 : 정신보건 사회복지
· E-mail : baeeunmi@naver.com

박 동 진(Dong-Jin Park)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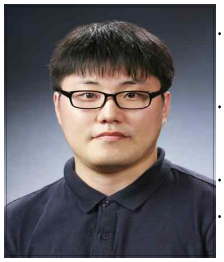

· 2015년 2월 :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
· 2017년 6월~현재 : 강남대학교 한국사회복지연구소 연구교수
· 관심분야: 장애인복지, 재활
· E-mai l: wookana@hanmail.net

신 숙 경(Sook-Kyung Shin) [정회원]

· 2001년 2월 : 한신대학교 재활학(학사)
· 2003년 12월 : 미국 서든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재활행정 및 정책(석사)
· 2012년 8월 : 미국 서든일리노이주립대학교 재활학(박사)
· 2013년 3월~현재 :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직업재활학, 장애인복지
· E-mail : ssookk73@hanmail.net